

궁금증을 물어드립니다

중앙상담실은 건강·법률·세무·보험·가정·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(nyopinion@koreadailyny.com), 전화(718-361-7700)를 이용,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확대된 급행 절차, 추가 실행되고 있는 신청서

OPT 신청 추가…F·M·J 신분변경 신청서 우선 진행중

<I-765>

<I-539>

문: 기존에는 급행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신청서나 청원서에 급행 절차가 적용되는 법안이 작년부터 시행 중이고, 새 법안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된 급행 절차 외에 현재 추가로 시행되고 있는 양식들이 있다고 들었다. 어떤 신청서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, 그리고 비용이나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다.

답: 2022년 3월 30일 이민국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급행 절차의 종류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.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에서 추가되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급행 절차로는 취업영주권 중 다국적 경영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1순위 취업영주권과 국익에 도움을 주는 분야의 신청인을 위한 2순위 취업영주권의 I-140 청원서였다. 초기에는 이 두 개의 청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없었고, 일반 접수로 접수되어 계류 중이던 청원서에 접수일에 따라 점진적으로 급행 신청을 받았으나, 2023년 1월 30일부터는 계류 중인 청원서나 초기 접

수하는 모든 청원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두 개의 청원서를 급행 신청할 경우 급행 비용은 2500불이며 급행 처리 기간은 45일이다.

현재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급행 서비스가 가능한 신청서에는 OPT나 STEM OPT 신청서인 I-765 신청에 가능하다. OPT는 학위를 수료하는 과정의 학과를 모두 수료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Pre-completion OPT와 졸업 한 후 사용이 가능한 Post-completion OPT로 나뉘는데, 이 두 가지의 OPT 신청 모두에 급행 접수가 가능하다. STEM OPT는 12개월의 일반 OPT를 완료한 후 STEM 분야의 학위를 수료한 학생들이 추가 24개월의 OPT를 신청하는 과정이다. 노동허가증을 OPT 또는 STEM OPT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의 급행접수비는 1500불로 급행 신청을 한 뒤 30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.

이번에 확대된 법안에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양식인 I-539도 포함이 되어 있다. I-539 양

식이 사용되는 경우는, 학생 신분인 F-1과 동반가족의 F-2, 교환방문 신분인 J-1과 동반가족의 J-2, 그리고 직업학교 학생인 M-1과 동반 가족인 M-2로의 체류신분 변경에 사용된다. 또한 취업의 기회로 미국에 체류 중인 E-1, E-2, E-3의 동반가족으로의 체류신분 변경 서류, 그리고 H-1B의 동반가족인 H-4, L-1의 동반가족인 L-2, O-1의 동반가족인 O-3, 그리고 P-1의 동반가족인 P-4로의 체류신분 변경 서류도 I-539 양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동반가족들의 급행 절차도 이번 법안에 추가되어 있다.

법안에 포함된 I-539 양식을 사용하는 신분 중 현재 I-539 양식으로 급행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F-1, F-2, M-1, M-2, J-1 또는 J-2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I-539 양식에 진행이 가능하다.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, 시행된 시점에서는 그 당시 I-539 양식이 이미 접수되어 계류 중인 신청서에만 급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. 그 뒤 2023년 6월 26일부터는 I-539 양식 접수와 동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신청서들에 접수되는 급행 비용은 1750불이며 처리 기간은 30일이다.

취업비자로 체류하는 동반가족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I-539 양식에는 아직 급행접수가 시행되지 않았다. 과거에는 취업을 신청하는 본 신청자의 I-129 청원서를 고용주가 작성하여 접수할 시, 동반가족의 I-539 양식이 함께 접수되고, I-129 청원서가 급행신청이 되면 I-539 양식도 함께 급행으로 승인해 주었었다. 하지만 I-539 양식에 지문 절차를 요구, 이는 신분조회를 할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반가족의 신청서는 급행처리를 해주지 않았다. 그 뒤 동반가족 중 E-1, E-2, L-2, H-4의 동반가족의 지문절차는 임시 중단했으나 여전히 함께 급행처리는 되지 않는다. 이번에 확대된 급행접수에 이 동반가족들의 신청서인 I-539 양식에 급행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이 부분이 시행되면 동반신청자들의 급행처리도 곧 이루어지겠다.

궁금증을 물어드립니다

중앙상담실은 건강·법률·세무·보험·가정·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(nyopinion@koreadaily.com), 전화(718-361-7700)를 이용,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확대된 급행 절차, 추가 실행되고 있는 신청서

OPT 신청 추가…F·M·J 신분변경 신청서 우선 진행중

<I-765>

<I-539>

문: 기존에는 급행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신청서나 청원서에 급행 절차가 적용되는 법안이 작년부터 시행 중이고, 새 법안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된 급행 절차 외에 현재 추가로 시행되고 있는 양식들이 있다고 들었다. 어떤 신청서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, 그리고 비용이나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다.

답: 2022년 3월 30일 이민국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급행 절차의 종류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.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에서 추가되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급행 절차로는 취업영주권 중 다국적 경영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1순위 취업영주권과 국익에 도움을 주는 분야의 신청인을 위한 2순위 취업영주권의 I-140 청원서였다. 초기에는 이 두 개의 청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없었고, 일반 접수로 접수되어 계류 중이던 청원서에 접수일에 따라 점진적으로 급행 신청을 받았으나, 2023년 1월 30일부터는 계류 중인 청원서나 초기 접

수하는 모든 청원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두 개의 청원서를 급행 신청할 경우 급행 비용은 2500불이며 급행 처리 기간은 45일이다.

현재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급행 서비스가 가능한 신청서에는 OPT나 STEM OPT 신청서인 I-765 신청에 가능하다. OPT는 학위를 수료하는 과정의 학과를 모두 수료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Pre-completion OPT와 졸업 한 후 사용이 가능한 Post-completion OPT로 나뉘는데, 이 두 가지의 OPT 신청 모두에 급행 접수가 가능하다. STEM OPT는 12개월의 일반 OPT를 완료한 후 STEM 분야의 학위를 수료한 학생들이 추가 24개월의 OPT를 신청하는 과정이다. 노동허가증을 OPT 또는 STEM OPT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의 급행접수비는 1500불로 급행 신청을 한 뒤 30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.

이번에 확대된 법안에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양식인 I-539도 포함이 되어 있다. I-539 양

식이 사용되는 경우는, 학생 신분인 F-1과 동반가족의 F-2, 교환방문 신분인 J-1과 동반가족의 J-2, 그리고 직업학교 학생인 M-1과 동반가족인 M-2로의 체류신분 변경에 사용된다. 또한 취업의 기회로 미국에 체류 중인 E-1, E-2, E-3의 동반가족으로의 체류신분 변경 서류, 그리고 H-1B의 동반가족인 H-4, L-1의 동반가족인 L-2, O-1의 동반가족인 O-3, 그리고 P-1의 동반가족인 P-4로의 체류신분 변경 서류도 I-539 양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동반가족들의 급행 절차도 이번 법안에 추가되어 있다.

법안에 포함된 I-539 양식을 사용하는 신분 중 현재 I-539 양식으로 급행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F-1, F-2, M-1, M-2, J-1 또는 J-2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I-539 양식에 진행이 가능하다.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, 시행된 시점에서는 그 당시 I-539 양식이 이미 접수되어 계류 중인 신청서에만 급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. 그 뒤 2023년 6월 26일부터는

I-539 양식 접수와 동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신청서들에 접수되는 급행 비용은 1750불이며 처리 기간은 30일이다.

취업비자로 체류하는 동반가족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I-539 양식에는 아직 급행접수가 시행되지 않았다. 과거에는 취업을 신청하는 본 신청자의 I-129 청원서를 고용주가 작성하여 접수할 시, 동반가족의 I-539 양식이 함께 접수되고, I-129 청원서가 급행신청이 되면 I-539 양식도 함께 급행으로 승인해 주었었다. 하지만 I-539 양식에 지문 절차를 요구, 이는 신분조회를 할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반가족의 신청서는 급행처리를 해주지 않았다. 그 뒤 동반가족 중 E-1, E-2, L-2, H-4의 동반가족의 지문절차는 임시 중단했으나 여전히 함께 급행처리는 되지 않는다. 이번에 확대된 급행접수에 이 동반가족들의 신청서인 I-539 양식에 급행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이 부분이 시행되면 동반신청자들의 급행처리도 곧 이루어지겠지.

이민

송주연 변호사

212-868-2200

718-360-9316

www.songnlaw.com